

※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(2023.10.12)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.
 ※ 사업주체는 아래 구비서류 외에도 대상자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서류 미제출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 ※ 부적격 의심자 및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는 관련된 소명자료 및 부적격 관련 서류를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. 미제출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해당서류		발급기준	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필수	인감증명서	본인	-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[용도: 아파트계약용(본인발급용)]
	서약서	-	- 접수장소에 비치
	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	-	- 접수장소에 비치
	신분증	본인	-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(단, 여권의 경우 2020.12.21.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)
	주민등록표등본 (전체 포함)	본인	-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주민등록표초본 (전체 포함)	본인	-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, 세대주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, 과거 주소변동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- 성명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(세대원 포함)를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추가	주민등록표등본 (전체 포함)	배우자	-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- 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
	혼인관계증명서	배우자	-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전부 공개 '상세'로 발급
대리인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본인	-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[용도: 서류제출 위임용(본인 발급용)]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
	위임장	본인	- 당첨자의 인감도장 날인, 접수 장소에 비치
	대리인 신분증, 인장	대리인	-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(단, 여권의 경우 2020.12.21.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)

※ 상기 내용에 오류가 있을 시 관계 법령이 우선 합니다.
 ※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(배우자, 직계 존·비속 포함)으로 간주합니다.
 ※ 주민등록표등·초본 발급 시 '세대주 성명 및 관계'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, 세대주 여부,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반드시 모두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